



의안번호	제 2015 - 31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12. 9. (제69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96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제97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2
III. 제96차 전체회의 논의결과	2
1.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	2
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6
IV. 제97차 전체회의 논의결과	10
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0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20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31
V. 향후 일정	40

별첨 황병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추가 검토”
 김현아, 오기찬, “양형기준의 규범적 설정 가능 검토”

김현아,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 II”

황병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II”

김현아, “근로기준법 등 양형기준 검토 III”

황병헌,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황병헌,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김세종,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I”

오기찬, “과실치사상 범죄군 양형인자 검토”

김세종, “형량범위 중첩”

김현아, 오기찬, “형량범위 세 영역간 중첩 관련 검토”

I. 제9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1. 13.(금) 16:00 ~ 18:30
- 장소 :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세미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 검토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설정 대상범죄 및 형량범위)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¹⁾

II. 제97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1. 30.(월) 10:00 ~ 14:2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4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1) 양형위원회 제70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3. 주요 안건

- 석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Ⅲ. 제96차 전체회의 논의결과

1.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

가. 형량범위 중첩의 유형

- 현행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간 중첩의 형태는 3가지임
 - ①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② 점으로 중첩되는 경우, ③ 폭으로 중첩되는 경우
 - 인접한 권고 영역간에 중첩은 공통

나. 양형기준 해설

■ 권고 영역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의 형량범위를 다시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이라는 3단계 권고 영역으로 나눈 다음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3단계 권고 영역 중 적절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 형량범위의 중첩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형량범위는 같은 범죄유형 내의 3단계 권고 영역 사이에서 중첩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확인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범죄유형별 권고 영역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특별양형인자의 중대성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은 권고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하고 있다.

권고 영역간 형량범위의 중첩은 특별양형인자만으로 권고 영역을 결정함으로 인한 불합리, 나아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엄격한 구별이 곤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인자 상호간의 영향력이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중첩 허용에 관한 견해

(1)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

- 권고 영역의 기계적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경, 가중영역 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별가중인자가 1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있어 감경 영역에 해당하나, 특별양형인자의 질적 판단결과(특정 특별가중인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나 일반양형인자(일반가중인자에 해당하나 당해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자인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가중영역에 포함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또한, 양형기준은 행위인자 우월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동수인 경우에도 기본뿐만 아니라 감경, 가중영역에도 해당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감경영역에 해당하지만, 가중영역에 포함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음
 - 양형기준 해설에서 언급한 ‘권고 영역 사이의 중첩’은 ‘인접’ 영역 사이에서의 중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이는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함
-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은 ‘권고 형량범위’에 있는

것이지 '권고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권고 형량범위'임. 즉, 당해 사건이 '징역 ○년부터 ○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영역'에서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제공하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2영역에 걸쳐있거나 3영역에 걸쳐있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

○ 개별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의 폭이 좁은 경우 중첩을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도 존재함

- 예) 법정형이 2년 이하인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이나 금액에 따라 4개 소유형으로 분류한 경우 등

○ 권고 형량범위 설정은 개별유형에 대해 가장 적절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지, 점으로의 중첩을 허용할 것인지 등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필요 이상으로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이 넓게 중첩되도록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9등급과 11등급(감경영역, 가중영역 관계) 사이에 폭으로의 중첩 허용

○ 영국 양형기준은 ① 인접 영역간 중첩 없음, ② 인접 영역간 점 또는 폭으로 중첩, ③ 감경영역, 가중영역간 점으로 중첩(극히 일부) ⇨ 그러나, 양형기준 준수의무는 감경영역의 하한과 가중영역의 상한 사이에 있을 뿐이므로, 사실상 감경, 기본, 가중영역은 전체가 폭으로 중첩

(2)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 양형기준 취지상 세 영역에 걸친 중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즉,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누되, 양형인자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양형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권고 영역 사이의 일정 부분을 중첩한다는 것임

- 양형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① 각 영역 사이의 중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② '권고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는 문언상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간 중첩' 또는 '기본영역과 가중영역 간 중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²⁾ ③ 2개 영역 사이에서만 중첩을 허용함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함
- 영국의 양형기준 검토 결과, 설정된 양형기준 15개 범죄군 중 크히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중첩을 허용하지 않음
-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의 대부분에 대하여 중첩을 두었다거나, 형량범위의 폭이 좁은 경우(법정형이 2년 이하인 과실치사, 3년 이하인 근로기준법 중 임금) 중첩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에서 세 영역에 걸친 중첩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교통범죄의 예와 같이 형량범위의 폭이 넓은 경우에도 중첩을 둔 점에 비추어 기존 양형기준에서 중첩을 둔 이유는 형량범위의 폭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라. 논의결과

- (1) 개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최적의 형량범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할 필요 없다는 견해 : 김세종, 김혜

2) '사이'의 사전적 의미는 '한곳에서 다른곳 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으로, 둘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의미하고 두 영역간 중첩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양형기준 해설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에도 부합함(2015년 양형기준 548쪽)

감경	감경/기본	기본	기본/가중	가중
----	-------	----	-------	----

[집행유예 선고 가능 영역]

경, 노수환, 범현, 이재권, 이진국(6인)

(2) 감정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은 점에서는 무방하지만 폭에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 강수진, 박지선, 이진국, 최준혁(4인)

(3) 감정영역과 가중영역의 중첩은 점에서의 중첩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 김현아, 오기찬(2인)

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안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근로기준법 제109조(3년 이하)

(가) 제5장(여성과 소년)

○ 제65조 (임산부 등 사용금지) ☞ 제외(다수의견)³⁾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3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자를 근기법 제65조에 정한 사업에 소개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3년↓
파견법 제42조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	5년↓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4호, 제91조 제4, 5, 6항	임신·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사용, 임신 중인 여성을 선내 작업에 사용, 산후 1년 미만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 및 해로운 작업에 사용	3년↓

○ 다수의견 : 김세중,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황병헌(8인)

- 장차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역할 확대·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청소년을 유해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3) 다수의견의 변화 : 제92차(포함) → 제93차(제외) → 제95차(제외) → 제97차(제외)

아청법 등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제 적용사례도 거의 없는 임신부 등 사용금지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 또한 없음

- 양형기준을 설정할 경우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오로지 법정형을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근거에 대하여 국민과 법관을 설득할 논거가 전혀 없어 오히려 양형기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음
-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화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소수의견 : 강수진, 김현아, 오기찬, 최준혁(4인)

- 임신부, 18세 미만자에 대한 도덕상, 보건상 건강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록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모성보호 중시,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 여권 신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현행 양형기준 검토 결과, 형량범위 설정시 선고형의 분포를 참고하나, 선고형의 분포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정형을 중심으로 규범적으로 설정해 온 측면도 있음
- 임신부 등 사용금지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유해업소사용금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등 유사한 구성요건의 선고형 분포를 참고할 수 있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제외(다수의견)⁴⁾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4) 다수의견의 변화 : 제92차(제외) → 제93차(포함) → 제95차(제외) → 제97차(제외)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6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다수의견 :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황병헌(8인)

-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처벌사례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기소·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적정한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음

○ 소수의견 : 강수진, 김현아, 오기찬, 최준혁(4인)

- 비록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근 모성보호 중시,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 여권 신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처벌 사례가 적더라도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나. 임금 등 미지급 형량범위

○ 형량분포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8	24		
수	7	21	314	25	434	4	135	1	52	44	8	1	1,046	6.12
비율	0.7	1.9	30.0	2.4	41.5	0.4	12.9	0.1	5.0	4.2	0.8	0.1	100	

- 소유형별 형량 분포

형량(월) 금액(만원)		2	3	4	5	6	7	8	9	10	12	18	24	계	평균 형량
5,000 미만	수	9	9	166	7	87	0	2	0	2	0	0	0	282	4.61
	비율	3.2	3.2	58.8	2.4	30.8	0.0	0.7	0.0	0.7	0.0	0.0	0.0	100	
5,000 ~10,000	수	2	6	112	14	206	3	40	0	10	1	0	0	394	5.66
	비율	0.5	1.5	28.4	3.6	52.3	0.8	10.2	0.0	2.5	0.3	0.0	0.0	100	
10,000 이상	수	0	3	33	5	130	0	87	0	46	38	7	1	350	7.66
	비율	0.0	0.8	9.4	1.4	37.1	0.0	24.8	0.0	13.1	10.8	2.0	0.3	100	

○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3년 ↓, 2년 ↓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가)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 8월

- 평균형량 징역 4.61월, 징역 4월이 58.8%로 가장 많은 분포
- 징역 4월이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제2유형과의 권고 형량범위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하한을 4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92.7% 포섭

○ 감경영역 : - 6월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를 고려

○ 가중영역 : 6월 - 1년

-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 및 제2유형 기본영역과의 균형을 고려

(나)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 평균형량 징역 5.66월, 징역 6월이 52.3%, 징역 4월이 28.4%로 그 다음을 차지
- 52.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에 포함

- 평균형량은 5.66월에 불과하나 금액 차이에 따른 가별성을 반영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한을 6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66.5% 포섭

○ 감경영역 : - 8월

○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다)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 평균형량 징역 7.66월, 징역 6월이 37.1%, 징역 8월이 24.8%로 그 다음을 차지
- 평균형량은 7.66월에 불과하고, 징역 6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금액 차이에 따른 가별성을 반영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한을 8월로 설정
- 기본영역에 50.7% 포섭

○ 감경영역 : 6월 - 1년

○ 가중영역 : 1년2월 - 2년6월

- 미지급 금액이 가장 큰 유형으로서 죄질도 중한 영역임을 고려하여 다소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한을 1년2월로 설정

IV. 제97차 전체회의 논의결과

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3년 ↓, 5년 ↓, 7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3년 ↓, 2년 ↓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나.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는 동종 전과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 반영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공무집행방해,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강요,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양형기준 등에서 행위태양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금품의 액수에 따라 유형분류를 하지 않는 대신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 지 여부 ➡ 포함(다수의견)
- 다수의견 : 강수진, 김세종,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현(11인)
 -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15개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점에서 ‘상당 금액 공탁’과 구별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면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와 별다른 차이 없음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 개인의 생명, 신체, 인격, 명예 등을 침해하는 범죄군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법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 일반감경인자 중 ‘상당 금액 공탁’과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점(‘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함) 등 참작할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상당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3) 특별가중인자(행위)

(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강제근로 등)

-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참조
- 고용관계라는 종속적인 지위에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

(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성범죄, 폭력, 선거,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강요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삼고 있음
- 중간착취의 경우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있음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학대하는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범행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동종 누범

(5) 일반감경인자(행위)

(가)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강제근로의 경우 폭력범죄와 중간착취의 경우 사기범죄와 범행
경위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폭력,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하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범
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
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 알선으로 취업, 모집, 채용을 하려 한
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
력 없음

(7) 일반가중인자(행위)

(가) 계획적인 범행

(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사전에 치밀한 계획, 고도의 지능적 방법 동원 등 '범행수법이 매

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을 상정하기 어려워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 방법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취업, 근로자 모집, 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가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8)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 (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증거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라. 임금 등 미지급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는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양형인자이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정의규정
 -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특별가중인자(행위)

(가) 악의적인 미지급

- 사용자의 임금 지급거절에 악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무에서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되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참조
-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상당한 채무 부담,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반영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과 동일

(4)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동종 누범

(5) 일반감경인자(행위)

(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 사용자의 지위에 다툼이 있거나 임금의 범위, 액수에 다툼이 있어 사용자가 이러한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근로자, 사용자의 지위, 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법적 소양을 요하므로, 미필적 고의에 준하여 일반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6)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7)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마. 임금 등 미지급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5년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대규모(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2년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정량미달판매 · 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타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아래와 같은 정의규정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사기범죄 중 조직적사기, 사행성·게임물범죄는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운송·저장·보관 자체를 감경인자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소액의 운송료 또는 보관료만을 받고 단순히 운송·저장·보관 등 행위를 대행하여 준 경우에는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

고 소액의 운송료, 수수료 등을 받고 단순한 운송·저장·보관 등만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식품·보건범죄(허위표시)는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일부만 혼합한 경우, 가짜석유제품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품과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가별성의 차이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소량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3) 특별가중인자(행위)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행위반가치가 중한 경우로서 다수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특히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한 경우 기망성과 시장의 교란이라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①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유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양형인자에 해당 하더라도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 그 죄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자의 적용을 배제함을 정의규정에 기재함으로써 동일한 사유가 중복 가중되지 않도록 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 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차량, 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가짜석유제품 제조·저장 등 시설에서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

○ 사문서,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동종 누범

(5) 일반감경인자(행위)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식품·보건, 성매매, 사행성·게임물범죄 등 영업범의 성격을 가지는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참조

(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참조
- 처음부터 불법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낮은 점을 반영
- 정의규정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6)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참조

(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7) 일반가중인자(행위)

(가)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식품·보건, 조세,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참조

- 석유사업법위반범죄도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음

(나) 단속 회피 시도

-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식품 · 보건, 성매매,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참조
-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라)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지명령 등 위반, 봉인 훼손(제5호)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반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함
- 정의규정
 -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마)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거나 그 설치 ·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 임차하여 사용(제6호)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반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함
- 정의규정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8)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등 참조
-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공범 상호간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1유형)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나) 단순 가담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 다만,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정의규정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 판매량은 불법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판매량이 주요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는 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등과 달리 수량에 따른 유형분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3) 특별가중인자(행위)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 다만,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판매량 또는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

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등유 등을 경유 또는 적합한 연료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1유형, 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다만 용량 위반 판매에 해당하는 2유형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없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4)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동종 누범

(5) 일반감경인자(행위)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 다만,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정의규정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6)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7) 일반가중인자(행위)

(가)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1유형)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과 동일

(나)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정량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일반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함

○ 정의규정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8)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위반 판매 등) ○ 법률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제6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2년 ↓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5년 ↓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5년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7년 ↓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특별감경인자(행위)

(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이를 감경사유로 삼고 있는 양형실무를 반영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동작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포함(다수의견)

○ 다수의견 : 강수진, 김세중, 박지선, 범현, 이재권, 최준혁, 황병현 (7인)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살인, 성범죄(사망 결과) 등 15개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합의의 상대방인 유족과 인적 대면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탓에 최대한 노력에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야 인정되는 점에서 '상당 금액 공탁'과 구별되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이나 피해회복의 정도 면에서 합의에 이른 경우와 별다른 차이 없음

○ 소수의견 : 김현아, 노수환, 오기찬(3인)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법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 일반감경인자 중 '상당 금액 공탁'과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점('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함) 등 참작할 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상당
-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3) 특별가중인자(행위)

(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구공판되는 사건의 대부분에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분석대상판결 확인 결과,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221건 중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4주 이상인 사건이 217건으로 98.2% 차지) ⇨ 사실상 제2유형은 가중영역에서 출발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고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였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행위반가치가 중한 경우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

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사망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외(다수의견)

- 하나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실체적 경합범 ☞ 형법 제38조에 가중처벌규정 있음 ☞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여 가중처벌(상한을 가중)
- 상상적 경합범 ☞ 형법 제40조에 가중처벌규정 없음 ☞ 양형기준 적용 제외
- 양형기준 해설

○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다수의견 : 강수진, 김세중, 김혜경,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현(11인)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실체적 경합범을 전제로 설정한 양형인자
- 방화범죄 양형기준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에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죄수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설정된 것으로

보임 ☞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 아무런 설명 없음

-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사망 피해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정할 경우 형량범위 불균형 초래(2인, 10인, 50인, 100인 등을 동일 취급) ☞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이득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2인'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정의하는 것 또한 그 기준을 합리적이고도 명확하게 정하기 곤란함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숫자는 가해자가 인식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이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행위책임주의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음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가중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가중하는 것으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만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범'보다 더 중하게 가중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가중처벌 체계에 반하고, 양형기준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호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칙으로 돌아가 어느 범죄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상 무용한 인자 설정
- 소수의견 ☞ 김현아, 오기찬(2인)
- 사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1인인 경우보다 결과불법이 더욱 크게 평가될 것임
 - 현행 양형실무도 피해자가 2인 이상일 때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고, 피해자 수를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음
 - '양형기준 해설'은 상상적 경합범의 일반적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님(상상적 경합범 사이에 법정형이 같은 경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데 장애 없음)

- 방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서도 상호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 공무집행방해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피해자 2인 이상 치사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치사와 치상 피해자가 섞여 있는 경우나 2인 이상 치상의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4)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동종 누범

(5)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가)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보험 가입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보험가입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점, 이를 감경사유로 삼고 있는 양형실무를 반영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일반가중인자(행위)

(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7)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대상 판결 검토 결과, 실무상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음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적시한 사례는 없었음
-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과 같이 이를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
- 의료사고 등에서 사후에 의료기록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

(다)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98차 전체회의
 - 일시 : 2015. 12. 14.(월) 16:00
 -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